

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
관리·운영 위탁 동의안



구 미 시

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·운영 위탁 동의안

의 안 번 호	
--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19. . .
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-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 구미시민의 수상레포츠 저변확대를 위해 공모로 『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』의 운영에 관한 우수한 위탁 업체를 선정하여,
- 『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』의 시설 및 프로그램 관리·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기하는 한편, 수상레포츠 활성화 및 이용자의 편의 제공에 기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위탁재산 현황
 - 시 설 명 :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
 - 위 치 : 구미시 수출대로 326-20 일원
 - 사 업 비 : 5,200백만원(국비 1,500, 도비 500 시비 3,200)
 - 주요시설
 - 체험센터 : 체험시설 1동(2층, 538㎡), 수상계류장(폰툰) 1식, 장비보관소, 사무실, 화장실, 샤워실, 탈의실 등
- 위탁업무 :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전반
- 위탁기간 : 위·수탁 협약 체결일로부터 ~ 2022. 12. 31.

3. 운영 소요예산(2020년) : 200백만원

(단위 : 백만원)

계	위탁금	비고
200	200	

※ 2021년 226백만원, 2022년 233백만원

4.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7조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19조
- 「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 제4조, 제5조, 제6조
- 「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」 제5조

사진대지

□ 체험센터

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104조 (사무의 위임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□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

제27조 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(이하 "관리위탁"이라 한다)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계약의 목적·성질·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. <신설 2015.1.20>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. <신설 2015.1.20>

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. <개정 2015.1.20>

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(轉貸)할 수 있다.<개정 2015.1.20>

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,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. <개정 2015.1.20>

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5.1.20>

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5.1.20>

1.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
2.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
3.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
4.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
5.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□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

제19조(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)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.

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,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<개정 2015.7.20>

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.

1.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
2.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(이하 “관리수탁자”라 한다)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
3.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
4.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- 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·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·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.<개정 2013.6.21>

□ 「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①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 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 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
 4.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-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.
-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구미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.
- ④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

관에 지원할 수 있다.

제5조(수탁기관의 선정기준) 수탁기관을 선정 할 때는 재정부담능력, 시설과 장비, 기술보유정도,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.

제6조(수탁기관 선정방법)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케 하고,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.

□ 「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」

제5조(위탁운영) ① 시장은 수상레포츠 체험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상레포츠 체험센터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받는 자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,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 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

할 수 없다.

④ 시장은 별표 1에 따른 사용료 징수를 수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⑥ 제1항에 따라 수상레포츠 체험센터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를 준용한다.

소관 실 · 과		체육진흥과
입 안 자	과 장	지 대 근
	담 당	강 호 근
	담 당 자	이 수 웅 (480-5014)